

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
檢 討 報 告 書

【최봉희 의원 발의】



2020. 8. 31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 253호로 2020년 8월 21일 최봉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동물의 생명보호,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소유자 등의 책임 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라.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마.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제8조)

바.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 ~ 제10조)

사. 동물의 구조·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 ~ 제14조)

아. 길고양이의 관리 (안 제16조)

자.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(안 제18조)

차.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동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수립

다. 입법예고: 2020.8.21. ~ 8.26./ 6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(안)은 2020년 8월 21일 최봉희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24일 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.

○ 본 조례(안)의 제안 이유는

- 최근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인구 1,000만 시대에 접어들고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약 2조원대로 급성장 하였으나 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구 차원의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

- 최근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17개구를 포함한 110여개의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며

아울러, 동물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반려견의 등록,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, 반려동물 문화 조성,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조례(안)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에서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소유자 등의 책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영등포구 단위의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 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,
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·유기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 시 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위한 동물 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유기·피학대동물 발견 시 이를 보호하고 유기동물 구조·보호조치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는 동물 보호·관리를 위해 적정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음.
-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확인가능 시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소유자에게 반환·인계 시 보호경비 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였고
- 안 제16조에서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

- 안 제17조에서는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육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서류를 검사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8조에서는 구청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·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
- 안 제19조와 20조에서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,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·체육공간 설치 및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(안)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유기동물 구조·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물학대와 유기 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,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수립,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,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,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·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동물보호법

-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**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1.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
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 - 가. 도로·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(이하 "유실·유기동물"이라 한다)
 - 나.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(이하 "피학대 동물"이라 한다)
 3.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 4. 동물학대 방지, 동물복지, 유실·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 5.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·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·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·관리,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